

# 2023 년 「전통시장·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」 지원대상 모집 공고

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,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·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「전통시장·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」 수혜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·상점가·상권활성화 구역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지원 대상

「전통시장법」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
- 지자체(시군구)의 「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른 상권공동체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중인 특성화 첫걸음 문광형 시장 사업단

## 2. 지원 내용

※ 지원금 4,050만원(지원금 기준 3,240만원) 이내(과업기간 120일 내외)

- 분담금 20%(현물10%+현금10%),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
-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

※ 지원내용

- 공동상표 출원,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내외의 IP출원
- IP상담 및 기타 경영·기술지도 관련 교육,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
- \* 과업내용은 컨설턴트, 지원대상 시장 등, 협력기관(향후선정)간 협의하여 조정

### 3. 접수 기간

2023년 5월 8일 10시 ~ 5월 12일 18시

### 4. 신청 방법

RIPC 사업수행 지원사업 신청시스템(<https://ripc.org/pms>) 온라인지원

\* 회원가입,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

### 5. 제출 서류

- 신청서(첨부양식 준수)
- 사업추진 활용계획서(첨부양식 준수)
-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(양식)
- 소속 지지체의 권리주체 협약서(첨부양식 준수)
- IP공정이용 협약서(선택, 첨부양식 준수)
- 자부담 납부 협약서(첨부양식 준수)
- 전통시장 입증서류(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, 전통시장 인정서 등) 1부
- 상인회 입증서류(상인회등록증, 사업자등록(고유번호)증, 법인등기부등본, (조합의경우)조합설립인가증,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(조합의경우) 등) 1부
-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(해당시) 1부

### 6. 지원 절차

접수 → 선정심의위원회(지원대상 결정,5월) → 협력기관(수행사) 입찰 공고 (6월) → 수행사 선정(7월)→ 지원 (8월~, 착수·중간·종료 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)

\*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(전통시장,상점가,활성화구역)의 대면발표 없음 (서류심사로 진행)

\*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(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)

### 7. 문의처

- 울산지식재산센터 김아현 컨설턴트(052-228-3087, [ulsanripc@ucci.or.kr](mailto:ulsanripc@ucci.or.kr))